

János Kornai의 比較經濟시스템 研究

姜 命 圭

이 논문은 항가리 경제학자 야노슈 코르나이의 비교경제체제론의 기본개념을 경리하여 그 視界를 전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그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경제를 古典型과 改革型으로 양분하여 관찰하고, 後者의 市場經濟體制로의 移行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본다 하더라도 경제체제비교의 기본 시각과 출발점은 그의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코르나이의 비교체제론의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1)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온정주의의 제단계와 협상제약의 연성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2) '不足'이라는 개념과 현상을 기업의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3)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과정에 수반되는 효율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치체계의 충돌현상을 다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코르나이의 경제체제비교의 문제제기는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학의 틀은 물론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까지 벗어나는 새로운 도전에 인류가 직면해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민마다에 깔고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것이자, 단순한 양극체제의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1. 問題의 提起

舊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른바 개혁과 개방의 노선을 택하면서 자유화와 시장화를 지향하는 世紀的 移行期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歷史的 大轉換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知的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있는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 移行期 自體에 관한 문제다. 여기에는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행기의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政策的 次元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날에 있어 移行期라 하면 주로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중심이 되어 왔고 이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축적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행은 社會主義體制→自由市場體制라는, 어떻게 보면 종래의 이행개념의 逆移行 過程의 문제가 세기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전입미답의 새로운 경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번의 지적 도전은 제례 사회주의의 개혁과 붕괴에 의해 終局的으로 指向하는 經濟體제가 무엇인가 하는 未來像에 관한 문제이다. 항용 재산의 자유화와 시장경제화라는 제도

개혁이 주요수단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資本主義化’로 흔히 이해되고 있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공지하는 바와 같다. 사회주의 붕괴후 지향해야 될 경제체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인류사의 숙제일 뿐이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이미 그 활력이 쇠퇴단계에 접어든지 오래임이 이론적·경험적으로 충분히 실증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자본주의 사회 자체내에서 이미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경제체제를 인류의 미래의 이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도 넘어서는 어떤 理想的인 經濟體制를 새롭게 추구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의 자본주의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 해체로 인한 資本主義 自體의 天井感 強化라는 次元의 새 경지가 전개되고 있어 새로운 비준에 의한 새로운 철학과 이념의 모색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체제의 구상을 역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변의 도전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70년간 인류역사가 체험했던 社會主義 經濟體制는 과연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의문이며, 이것은 자본주의체제와의 對立構圖下에서의 兩極體制比較가 아닌 일반적·이론적 시각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整理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종래에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부지기수로 많았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냉전시대의 양극대립 구도가 밀바닥에 깔려있는 체제비교였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時空을 超越한 一般理論的 視角에서 經濟시스템論으로서 다룬 연구는 매우 희귀하다 하겠다.

이 논문은 세기말의 대전환기에 제기되고 있는 이상의 세 가지 과제 중 세계변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János Kornai의 연구업적 중 이와 관련되는 측면들을 추출하며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不足의 經濟學』[Kornai(1980a)]으로 알려진 Kornai의 社會主義經濟시스템論은 단순한 제도비교가 아닌, 보다 一般理論的인 次元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分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經濟改革과 體制崩壞의 참뜻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體制的 大轉換을 초월하는 經濟의 本質문제까지 투시할 수 있게 하는 시계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²⁾

(1) 맘스의 『資本論』은 차치하고라도 經濟學의 歷史自體가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變化와 그 문제들을 설명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2) Kornai의 社會主義經濟研究는 Walras의 均衡理論과 Keynes의 有效需要論의 世界에서 다루는 經濟시스템과 그 이론을 모두 포함하는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매우 아신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2. 企業과 國家의 關係

2.1. 溫情主義의 諸段階

János Kornai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本質的 特徵으로 인식하고 있는 “不足”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최초로 제기되는 것은 ‘國家와 企業의 關係’라는 制度的 側面이었다.⁽³⁾

이것을 Kornai는 ‘父母와 子息간의 經濟關係’에서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純粹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現物贈與 및 受動的 收容의 단계, 둘째는 現物贈與 및 積極的 意思表示의 단계, 셋째는 資金支援의 단계, 넷째는 自活 및 補助의 단계, 다섯째는 自助 및 獨立의 단계이다 [Kornai(1980a, pp. 561~562)]. 이 다섯 단계는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완전자립에 이르기까지의 부모·자식 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추한 것으로서 “溫情主義의 程度”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⁴⁾

지금 부모를 국가로, 자식을 기업이나 가계로 대치한다면 國家와 企業 및 家計와의 關係上의 “溫情主義의 程度”는 그 經濟體制의 性質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Kornai는 사회주의경제에서의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은 表로 나타내고 있다.

〈表 1〉 社會主義經濟에서의 企業과 國家의 關係

溫情主義의 程度	經常生產에 대한 投入物 供給		投資의 配分	
	改革 以前	改革 以後	改革 以前	改革 以後
1. 現物贈與 및 受動的 收容	+		+	
2. 現物贈與 및 積極的 表示	⊕		⊕	
3. 資金支援				⊕
4. 自活 및 補助		⊕		⊕
5. 自助 및 獨立				

出處 : Kornai(1980a, p. 563; 1986a, p. 54)

여기서 +표는 온정주의의 정도가 全面的임을 나타내고 ⊕표는 그것이支配的 내지 典型的이지만 全面的이지는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段階別 特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단계는 中央當局이 기업들에게 투입물을 現物로 配給하되 화폐의 매개역할은 거의 활용하

(3) Kornai(1980a) 자신은 이 문제(國家와 企業의 關係)를 그의 주저『不足의 經濟學』의 마지막 第22章에서 다루고 있지만 “不足”現象의 制度的 틀에 관한 暗默的 내지 顯示的前提是 이 책의 첫머리부터 도처에 알려 있다.

(4) paternalism은 우리 말로 溫情主義 또는 家父長主義로 번역할 수 있다.

지 않는다. 물론 첫 단계가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中央의 指令이 投入物 供給과 投資配分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使用者의 의견따위는 문지도 않는다. 그러나 傳統的 時代의 가장 전형적인 온정주의의 정도는 제 2 단계의 投入과 投資材의 配分에서 나타난다. 중앙당국이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이 때 當該企業의 要求事項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당국의 배분에 不滿일 때는 그 욕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任意의in 要求를 하거나 “로비活動”을 통해서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른바 “計劃의 홍정”(plan bargaining) 현상은 이 같은 經濟管理形態에서 잘 알려진 경험이다[Kornai(1980a, 3章 2節) 참조]. 중앙당국이 기업에게 보다 적은 투입물을 배정하면서 보다 많은 산출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은 투입은 보다 많이 요구하고, 산출은 보다 적게 약속하려는 과정에서 바로 홍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단계의 “資金支援”은 改革 以後에 비로소 그것도 投資配分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投資計劃이 企業內에서 企業의 主導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國家의 財源으로 조달되는 경우에 국가와 기업간에 조성되는 관계이다. 여기서 투자기업은 자금을 더 얻으려고 하지만 의사결정당국은 기업의 요구를 拒絕할 수도 收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의 自活+補助의 단계는 改革(1968) 이후에 가장 보편화된 현상이다. 투입물의 배분은 거의 전적으로 이런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원칙상 “獨立採算制”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支出은 自體採算으로부터의 收入內에서 해야 되고 自體所得으로生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資金上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가가 여러 가지 자금지원의 방법으로 기업을 救出해 준다.豫算制約의 硬性과 軟性에 관한 Kornai의 분석은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Kornai(1980b)].

기업의 自體財源에 의한 投資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은 그 경비를 自體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資金上 어려움이 발생하면(예컨대 經費計劃이 초과되면) 국가가 기업을 救해 준다. 투자사업이 資金上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넷째 단계의 온정주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로 “自助+獨立”的 단계는 위 표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항가리의 第1次 改革(1968) 以前에는 물론 그 以後에도 기업이 스스로 곤경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자력에 맡겨진 예가 없었다는 점에서 企業의 破產法이 생기기 以前까지는 이 다섯번째의 溫情主義 清算의 단계가 도래되지 않았던 것이다.⁽⁵⁾

(5) Kornai는 항가리의 社會主義經濟史上: 最初의 改革을 1968년의 개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以前의 時期는 傳統的 管理體制로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즉 현존하는 온정주의의 정도는 社會諸關係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社會構造를 연구하는 데 있어 위 表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온정주의의 정도라는 개념은 Friedman과 Hayek派로 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Kornai는 말하고 있다. 사실 다섯째번의 ‘溫情主義 제로의 程度’는 사유재산과 獨立企業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조차 완전한 형태로 실현된 일이 없었다. 19세기 중엽의 영국경제가 거기에 근접했었다고 하겠으나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에 대한 국가 간섭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손해를 보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들을 家父長的 溫情主義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政府保證, 有利한 條件의 信用, 免稅, 金融支援과 같은 수단들이 이용된다. 실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조차도 정부에 압력을 넣어 곤란한 기업을 지원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게 한다. Friedman이 케인즈學派를 비판하는 초점은 경쟁을 약화시키고 “自然淘汰”를 방해하는 바로 국가권력의 증대에 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Friedman, Hayek et al. (1974)]. 케인즈學派의 이념이 경제정책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社會發展의 過程이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든지 또 정치가들이 케인지안의 충고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한낮 科學思想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생산이 거대하게 집중되어 있고 국가관료조직이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微視組織들을 原子論的 競爭에 방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자의 지지에 의존해야 되는 정부가 失業, 物價, 經濟成長 등등이 경제의 內在的(自動的)인 사항들이니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公衆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경제사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선택은 다만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들의 組合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사이에는 자본주의 체제하라 하더라도 조만간에, 그리고 다소간에 온정주의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⁶⁾

Kornai는, 만일 이것이 현대자본주의의 사정일진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더더욱 뚜렷한 일이라고 말한다. 생산수단의 社會的 所有자체가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積極的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이 국가의 역할은 강약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존하게 된다. 중앙당국이 경제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기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무기고에서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기를 원하게 된다[Tardos(1975)]. 거대하고 강력한 多次元의 制御裝置가 사회주의 경제에는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그 自體의 法則에 따라 점점 더 강화되며 성장한

(6) 이 現象은 막스主義 文獻에서는 오랜동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우리 社會에서의 政經癥着도 이 現象의 다른 表現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위로부터”의 온정주의적 경향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같은 경향은 “밑으로부터”의 온정주의에 대한 요구에 의해 보완된다.

下位級 經濟管理者 예컨대 기업의 관리자와 그 上級機關들은 온정주의에 대해서 상반된 감정을 갖게 된다. 즉 이들은 온정주의를 스스로가 바라는 동시에 이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온정주의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정주의는 絶對的 保護와 安定性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위기를 맞을 때 국가가 이것을 완화시켜 주거나 손실을 완전히 보전해 주는 것이다. 企業管理者에게 이것은 지금히 든든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존속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국가의 자금지원을 얻게 될 때는 자기재원 없이도 기업의 성장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면 여기서 사태가 그 逆으로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몇 가지 요인이 체제가 극단적인 온정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세 가지 경우만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下位級 管理者들의 獨立性 要求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위에서 이들의 감정이 상호모순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온정주의적 체제로 마련되는 안정성을 환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급기관이 계속 자기들의 内部일에 간섭하고, 後見者然하는 데 대해서 반발한다. 무슨 일이든 ‘부탁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 卑屈한 感情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력에 의존하기를 바라고 이같은 욕구가 이른바 改革의 原動力의 하나인 것이다.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를 성숙의 단계로, 바꾸어 말하면 보다 낮은 수준의 온정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힘이다.

온정주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렇다. 즉 下位級 經營管理人們의 創意力 缺如에 대한 一般公衆과 上位指導層의 不滿이다. 잠시 이를 유추해 본다면, 부묘에 의해 過剩保護된 아이는 수동적으로 되고 무력해진다는 사실에 비유할 수 있다. 의사 결정도 남에 의해 이루어지고 곤경도 남에 의해 극복되어지는 데 익숙해져 버린다. 온정주의가 고도화될 때의 ‘教育效果’는 경제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사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태도와 어려움에 대한 불평불만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는 등은 잘 알려진 현상들이다. 이같은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인식이 分權化的 改革의 방향으로 與論을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은 경제관리자들의 ‘行動’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에는 셋째 번 요인으로서 ‘組織’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미 본 바와 같이 경제생활에서 온정주의가 고도화되면 자원배정과 분배에 있어 配給方式을 채택해 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과 생산물이 기업과 비영리기관 및 가계에 순전히 行政的 配給網을 통해서만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은 오로

지 그 사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 경우 生產과 消費의 分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現物配給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가 점차 분화되면 모든 투입물을 배급제로 배분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生產・消費의 分化가 意思決定과 必要情報의 分權化를 가져와 결국은 個別組織들의 自立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최고의 온정주의인 첫 단계(現物贈與+受動的 収容)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이를 제약하는 이같은 요인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 오랫동안支配的이거나一般的인 것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단계(즉 現物供與+積極的 意思表示)는 상당기간에 걸쳐 국가와 기업 간 관계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어왔다. 50년대 末 내지 60년대 初에 시작된 東歐의 改革들은 온정주의의 수준을 이보다 더 낮추고자 했던 발걸음이었으며 향가리에서는 이미 이 때에 셋째와 넷째 단계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2. 溫情主義와豫算制約의 軟性化

이제 역사상의 段階論의인豫測에서 實際的 現實로 돌아오기로 하자. 앞서의 表에 따르면 1~3단계의 온정주의는 社會主義企業들과 非營利機關들의 性格을 나타내고 있다(물론 실제의 상황은 나라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리고 만일 사정이 그렇다면 온정주의가 이른바 ‘不足’ 현상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두 가지 現象間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軟性豫算制約’에 있는 것이다. 제 5 단계의 온정주의는 예산제약이 完全硬性임을 뜻한다. 기업의 財務상태가 어떠하든 국가가 간여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국가는 법에 의해 과해지는 조세를 거두어 들이면 그만이다. 기업에 대해서 “同情”을 느끼지도 않고 곤경에서 구출하려고 도와 주지도 않으며 설혹 기업이 파산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상관도 없는 일이 된다.

첫째 단계의 온정주의는 기업이 자금상 곤경에 처할 때 국가가 稅金控除, 有利한 信用供與, 財政補助, 損失補填, 製品價引上 등으로 기업을 구출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뿐 아니라 국가는 취약한 기업이나 심지어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만일 온정주의적 간여가 100企業 중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하면 기업들이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간여가 아주 빈번히 일어난다면 企業들의 行動樣式이 그것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定型化된다. 이것이 바로 Kornai가 말하는 軟性豫算制約이다. 온정주의야말로 예산제약의 軟性化를 설명하는 直接的 표현이다. 그리고 만일 연성화가 일어

나면 그것은 不足현상과 연관되는 몇 가지 현상을 수반하게 된다. 즉 ‘거의 滿足을 모르는’ (almost insatiable) 物財需要와 이에 대한 蓄藏性向, 거의 滿足을 모르는 勞動需要와 이에 대한 蓄藏性向, 거의 滿足을 모르는 投資意慾 [Kornai(1980a, pp. 549~551)] 등등이 그것이다.

Kornai는 기업과 비영리기관들에 의해 吸水질 (pumping)이 자행되는 “吸引模型” (suction model)을 제시하고 있는데 [Kornai(1980a, 21章) 참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온정주의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첫째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온정주의는 기업의 수요에 대한 資金制約을 무르게 (軟性化)한다. 즉 水道꼭지가 고장난 것이다. 購買企業이 販賣企業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는 제 1 단계의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제 2, 제 3의 그것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은 투입물을 공급해 주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비단 ‘水平的으로’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부기관들로부터 ‘垂直的으로’도 吸引하고 있는 것이다 [Tardos(1975)]. Kornai는 이 현상을 항가리 用語로 父母・子息간의 關係로 표현하고 있다. 즉 자식이 자기 부모로부터 빨아내는(pump) 것이다. 자식이 어릴 적에는 초코렛이나 아이스크림을 더 달라고 보채지만 커지면 더 많은 용돈을 요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첫 살림집이나 자동차를 장만하는 데까지 부모의 덕을 더 크게 요구하게 된다. 기업과 상급기관사이의 온정주의적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吸水질’ (pumping)이 나타난다. 제 2 단계의 온정주의에서처럼 상급기관이 資財와 勞動을 現物로 配定한다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은 그것들을 가능한 최대량을 확보하려 든다. 제 3 단계의 경우처럼 貨幣가 補助될 때는 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이 가능한 최대액의 화폐를 흡수하려고 힘쓰게 된다. 吸水질 (pumping)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신뢰가 가는 주장을 편으로써 그리고 세월이 좋지 않을 때는 불평을 늘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裏面工作’ (lobby)을 편으로써 펌프질을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건대, 軟性豫算制約, 滿足을 모르는 需要, 水平의이고 垂直의인 吸水질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련의 經濟現象과, 높은 수준의 온정주의 같은 일련의 制度의 現象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후자 즉 제도적 현상이 전자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不足’ 과 經濟 시스템

3.1. ‘不足’의 再生産

Kornai가 주저인 『不足의 經濟學』에서 문제를 제기한 ‘不足’이란 어떤 概念인가를 이해

해 보기로 한다. 不足현상은 우선 우리가 누구나가 ‘消費者’로서 경험하게 되는 주지의 현상을 지칭한다. 소비재공급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부족 때문에 공급이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가령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든가 전화 가설에 이권이 붙는다든가 교육시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대학입학의 어려움, 주택부족, 의료서비스 부족 등에서 경험하는 심각한 社會문제가 어느 국가에서나 제기되는 것들이지만 사회주의 경제에서 보다一般的・構造的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Kornai의 주장이다.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生產者의立場에서도 사회주의하에서는 턱없는 부족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資材나 半製品・部品의補給이 중단되는 일이 빈번할 뿐더러 투자의 實行過程에서도 건설과 施設能力의 부족은 일반화되어 있고 이보다 더한 것은 노동력부족이 점점 생산증대에 애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현장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이 이같은 부족현상의 원인은 각기 독립적인 별개의 현상에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가령 어떤 부분의 부족은 계획임안자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다른 분야의 부족은 제품을 출하하는 공장 또는 판매를 담당하는 流通商企業의 부주의로 야기되었으며 또 어떤 것은 가격을 너무 낮게 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등의 설명을 한다.

그러나 Kornai는 이상의 諸현상은 모두 그 뿌리를 같이 하며 공통의 원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동일한 일반적 현상의 각기 다른 구체적 결과일 뿐인 것이며, 여기서 그 共通의 一般的 原因이란 ‘不足의 再生產’ 현상을 말한다. 이 때 부족현상이 ‘再生產’된다는 말은 문제가 一過性으로 지나쳐 버리는 偶發的인 것이 아니라 特定狀況下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계속되는 現象의 總體를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不足이 不足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같은 類의 自己運動・自己再生메커니즘도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뜻은 特定 條件下의 經濟메커니즘의 어떤 性質이 ‘不足’을 연속 새롭게 만들어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을 Kornai는 사회주의 경제의 중심문제의 하나라고 보며 이에 대한 분석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의의 전제로서 외국무역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微視經濟學의 見地와 巨視經濟學의 見地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3.2. 資源制約 시스템과 需要制約 시스템

微視分析에서는 통상 생산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우선 이 기업이 자본주의 기업인가 사회주의 기업인가의 문제는 불문에 부친다. 기업은 생산증대가 목표라고 가정하고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묻지 않기로 한다. 즉 위로부터의 指令 때문인가, 自己自身의 決定인가, 또는 利潤 목적인가, 上部가 약속한 賞與 때문인가, 顧客의 騁促 때문

인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생산을 증대하고자 한다면 어떤 制約이 있을까? 물론 이것은 生產函數가 부등식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企業의 生產模型을 그릴 수 있는 경우다.

어떤 기업이든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수많은 제약이 있다. 또 기업의 전체 즉 國民經濟全體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上限이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은 세 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資源制約’이다. 즉 생산활동에 쓰이는 投入財는 利用可能量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物理的・技術的인 制約이다.

둘째는 ‘需要制約’이다. 즉 제품의 판매는 구매자의 一定價格으로 표시되는 支拂可能한 需要를 넘지 못한다.

셋째는 ‘豫算制約’이다. 이것은 기업의 貨幣支出은 當初의 資金스톡과 제품의 판매에 의한 利益額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제약중 어떤 것이 더 ‘有效’한가 하는 문제는 各 經濟시스템의 特徵과 밀접히 연관된다. 여기서 制約이 有效하다는 것은 制約條件이 비교적으로 빠빠해서 生產增大가 制約을 받는다는 뜻이며 比較的 넓은(느슨한) 制約은 有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Kornai는 제약을 有效性의 觀點에서 두 가지의 純粹型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需要制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생산증대의 제약이 구매자의 지불가능한 수요이다. 수요제약은 물리적인 차원제약보다도 더 좁은 限界를 설정한다. 資源의 利用可能量이 늘면 생산의 加一層의 增大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생산기업은 이 可能性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生產增加分을 판매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Kornai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그 古典的 形態에 있어서는 需要制約 시스템이다. 이 경제야말로 막스가 『資本論』에서 生產의 無制限 擴大傾向과 市場의 限定된 購買力 사이에 矛盾이 있다고 본 경제인 것이다[Marx(1867, 3編 5章) 참조].

Keynes도 이 문제에 주목했다[Keynes(1936, 3章, 6章 등) 참조]. 그는 有效需要의 增大可能性을 분석하여 특히 政府投資와 私的投資의 刺戟과 이의 相乘效果에 의한 雇傭 및 消費需要와 所得에 미치는 間接的인 效果의 可能性을 분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Kornai는 현대자본주의는 케인즈가 제시한 積極的 國家介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순수한 수요제약시스템이 아니라고 평하고 있다.

또 하나의 순수형은 資源制約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생산증대에 有效한 제약은 利用可能한 物理的 資源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 古典的 形態에 있어서는 資源制約의

시스템이라고 Kornai는 보고 있다.⁽⁷⁾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경제가 資源制約시스템下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경제가 어느 순간에 있어서나 可用資源을 100% 利用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생산에 있어서는 短期的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嚴格한 補完性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所與이고 각종 비용은 정해진 비율로 組合되게 마련이다. 즉 일부의 자원이 어떤 시점에 애로가 되어 있다고 판명되는데도 같은 시점에 있어서 다른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未利用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작업현장에서도 가공해야 된 原材料가 필요한 순간에 마침 보급이 안된다든가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 한 가지 부족하다든가 또는 停電이 된다든가 하면 노동자의 일부는 할 일이 없어져 待期상태에 있게 된다. 또는 그 반대로 원재료는 있지만 그 일을 담당한 노동자가 現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加工作業이 진행되지 않는 사태도 벌어진다. 애로가 되는 자원에서는 不足(shortage)이 나타나고 補完關係에 있는 資源에서는 余剩(slack)이 나온다. 그러므로 不足과 余剩은 生產全體와 長期에 걸쳐 보면 서로 排他的인 현상이 아니다. 必然的으로 同時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不足과 余剩의 同時的 出現이라는 사실에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경제가 需要制約型인가 아니면 資源制約型인가의 물음에 대해서 그 余剩 즉 資源의 未利用率을 가지고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개의 特定 經濟시스템 즉 資源制約型과 需要制約型을 비교해서 前者の 資源平均利用率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生產의 基本過程에 있어서 무엇이 ‘有效的 制約’이었던가 하는 것이다. 만일 생산의 基本的 과정의 대부분에 있어서 수요계약이 유효하고 물리적 자원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需要制約 시스템이다. 그러나 基本過程의 대부분의 상황이 그 逆이라고 한다면 즉 생산이 계속 물리적 애로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은 資源制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測定’의 문제를 제기한다. ‘不足’은 어떤 맥크로의 集計量으로 기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經濟單位의 購買力의 總量으로 나타낼 수도 없다. 부족이 만성화되면 經濟單位들의 行動은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황에 순응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필요한 데도 바로 그때에 입수가 안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다시 말하면 ‘強制代替’[Kornai(1980a, pp. 36~40 등.)]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다. 強制代替 또는 強制支出은 그 소유자가 본래의 購買意圖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력을 흡수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

(7) 社會主義經濟에 관한 이 같은 定義의 起源을 Kornai는 1920年代 蘇聯의 經濟學論爭에서 찾고 있다[Kornai (1986a, p. 30, note 5)].

에 貨幣單位로 測定되고 集計된 ‘超過수요’는 操作可能한 크기가 아니다.⁽⁸⁾

‘不足’이란 몇 百萬의 下位微視(sub-micro) 수준의 基礎的 經濟事象의 總體를 말한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구매자인 기업, 공공단체 또는 가계가 마침 구입하려고 하는 제품 또는 用役이 어떤 장소에서 입수되지 않는다.

(2) 기업 또는 공공단체가 마침 그 활동에 필요한 어떤 투입재가 작업현장 또는 사업소에서 입수되지 않는다.

(3) 기업이나 공공단체, 가계가 當場의 부족현상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급한 強制適應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구매행위나 생산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즉 부족이 되어 있는 제품이나 용역을 이보다 低級의 또는 보다 高價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慢性的 不足이 있는 경우는 모든 순간마다 數千, 數萬의 이와 같은 基礎的 不足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족의 강도는 이같은 基礎的 不足현상의 頻度에 의존한다.

이것은 確率的인 大量現象이기 때문에 統計的 記述이 가능하다. 하나하나의 基礎的 不足현상은 정확히 관찰가능하지만 모든 부족현상을 예외없이 모두 관찰·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 목적을 위해서는 기초적 부족현상의 代表的 標本을 관찰하며 이 것들의 典型的인 부족현상의 頻度를 확정함으로써 완전한 측정에 대신할 수 있다.

이상에서 미루어 不足의 強度는 유일한 綜合的 尺度로는 측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不足指標로 이루어지는 vector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부족지표는 가령 하나하나의 典型的인 不足현상의 發生頻度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이다.

Kornai는 이와 같은 思考過程에 입각해서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生產은 종종 資源制約的 物理的인 隘路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生產에 있어서는 投入財의 不足强度가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同一內容의 두 가지 表現일 따름이다.

3. 3. 硬性豫算制約과 軟性豫算制約

Kornai는 종전의 마이크로경제학에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분류인 硬性豫算制約과 軟性豫算制約을 나누어서 분석한다.

鋼鐵의 規律이 관철되는 경우 그에 산재약을 ‘硬性’이라 한다. 즉 기업은 자기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자금밖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전술한 얘기지만 販賣收入의 한도내에서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신용은 얻을 권리는 있지만 은행은 ‘保守的’이고 ‘正統的’條件下에서 밖에

(8) 이것이 바로 ‘不均衡理論’과, 社會主義經濟에서 나타나는 不足現象에 관한 分析이 다르게 되는 하나의 要因이라고 Kornai는 보고 있다.

신용을 供與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후의 판매수입에 대한 대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이 시종일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예산체약이 ‘軟性’이라고 한다.

예산체약이 硬性이나 軟性이냐 하는 것은 間接的으로 결정되지만 그것은 다음 두 가지 현상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첫째는 기업의 ‘存續’ 문제다.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여 살아남는가의 여부다. 기업이 중대한 자금난 때문에 지불불능에 빠져 倒產하는 경우는 그 예산체약은 硬性이다. 손실이 원인이 되어 파멸하는 경우다. 그것이 자신의 태만 때문에 궁지에 빠진 경우엔 본인과 관계없는 외부상황으로 인한 불운의 결과였건 마찬가지다.

이 경우 국가가 기업을 궁지에서 구제한다면 이런 예산체약은 軟性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가령 補助金, 諸稅와 其他 公課負擔支拂의 個別的 免除, 그 全部 또는一部免除, 期限到來한 債務支拂의 延期, 政府가 決定하는 投入財 固定價格의 引下, 期限到來한 信用償還의 延長 등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萬能의 保險會社이며 손해를 입은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부담을 보상해 준다. 따라서 예산체약이 軟性일 때 기업의 존속은 自動的으로 보장된다.

예산체약이 軟性인가 硬性인가를 간접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기업의 ‘成長’에 관한 태도이다. 기업의 성장이 자신의 재무상태에 의존한다면 그 예산체약은 硬性이다. 즉 그것은 既成利潤中에서 얼마를 축적했는가, ‘保守的’條件으로 신용을 얻을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투자목적을 위해 신용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것은 財務狀態의 전망과 투자의 期待收益率에 달려 있다. 만일 투자가 자금상 파탄을 가져 온다면 이것은 기업의 도산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만일 기업의 성장이 현재와 미래의 財政狀態와 무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산체약은 軟性이다. 투자는 실패가 없고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기업은 연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Kornai가 뜻하는 예산체약의 경성은 1960年代 중반부터 있어온 經濟管理의 改革論爭에서 제기되었던 ‘企業의 利潤關心’과는 판이하다는 점이다. 가령 기업관리자와 근로자의 利潤(分配)關心은 연성의 예산체약과 兩立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기업관리자는 결손이 발생한다 해도 근로자가 慣例대로의 利潤配分을 얻을 수 있도록 財政補助를 상급기관에 요청한다. 경성의 예산체약은 행동과 선택의 자유를 제어한다는 뜻에서 ‘有效한 制約’이다. 같은 뜻에서 연성의 예산체약은 행동의 제약에 유효하지 않다. 기업의 財政상태가 행동을 제약하지도 않고 貨幣는 受動的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資材와 生產能力을 확보하는 것이지 돈은 어떻게든 된다’ — ‘請負人이

있으니 돈이 없다고 投資를 그만 둘 수는 없다' —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 '缺損이 생겨도 國家豫算이 부담해 준다'는 등의 사고가 기업관리자들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사고는 예산체약의 경성과 연성이 企業經營者の 態度와 行動의 規則性을 反映하는 사례들이다. 물론 이것을 기업의 財政收支를 나타내는 簿記법주와 혼동해서도 안된다. 후자는 '事後'의 收支表로시 언제나 유효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期首와 期末의 資金스톡의 差額은 수입과 지출의 차액과 일치한다. 이에 반해서 예산체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事前'의 規則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체약은 '事前'의 제약이기 때문에 企業管理者의 '期待'와 연관된다. 이期待는 一回性의 사태에 의한 것도 아니고 관리자의 자기기업에서의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 長期에 걸친 幅넓은 經驗의 一般化에 의해 형성된다. 기업이 재정파탄으로부터 절대로, 또는 거의 대부분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관리자는 자기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태를 상정하게 될 것이다. 예산체약이 경성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스스로의 행동을 적응해 간다. 그런데 만약 損害補償이 자주 행해지게 되면 또 만일 기업의 성장이 빈번히 기업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이루어 질 때는 기업관리자는 자기 기업도 예산체약의 한도를 넘어서도, 또는 잘못된 투자가 야기시킨 재정파탄에도 살아 남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느끼게 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이제 確率 100%로 관리자는 기업의 존속이 보장되고 모든 손실이나 투자의 실패를 견뎌낼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기업관리자의 대다수가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게 된다면 예산체약의 실행은 매우 軟性的이라고 볼 수 있다.⁽⁹⁾

Kornai는 여기서 사회주의 경제는 그 古典的 形態에서 예산체약이 軟性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經濟管理改革이 항가리를 비롯한 社會主義諸國에서 利潤配分을 정착시키기는 했어도 예산체약을 硬性化시키는 데까지는 못 미쳤고 有效한 制約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었다고 평가한다.

이상에서 본 기업의 예산체약의 경성·연성과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정 즉 자원체약과 수요체약의 유효성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먼저 경성의 예산체약인 경우를 보자. 投入財에 대한 企業需要는 그 가격과 판매자의 財政狀態에 의존한다. 사실 標準的인 需要理論으로 알려진 명제가 타당한 경우란 구매자의 예산체약이 硬性인 경우뿐이다.

구매자로서의 기업은 과다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과다인원을 고용한다거나 과다투자하는 것

(9) 여기서 Kornai는 ①期待의 形成은 반복되는 事象의 機率의 性格의 觀察과 主觀的인 評價에 입각한다는 點과 ②硬性·軟性的 程度는 兩極端만이 아니기 때문에連續性的 尺度로 測定해야 됨을 강조한다.

등을 自發的으로 삼가하게 된다. 여기서 ‘過多’하다는 말은 판매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수요 제약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에 지출을 正當化할 수 없게 되어 끝내는 도산에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수요의 형성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不然인 경우 ‘暴走’는 위험을 가져와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생각의 신중성은 모든 企業間關係에도 파급된다. 기업은 모두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가 된다. 구매기업의 수요는 硬性豫算制約으로 제한되고 판매기업의 賣上은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도) 需要制約에 의해 제한된다. 바로 이것이 需要制約 시스템이다.

물론 總需要는 케인즈 政策에 의해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산제약이 경성인 한 수요는 有限하다. 케인즈流의 需要擴大가 있다 해도 투자가는 여전히 危險回避行動을 계속한다. 이 시스템은 자원제약의 애로에 의해 制定된 경계까지 확대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軟性豫算制約은 어떤가? 이 경우는 수요측에는 아무런 自發的 制約도 없다. 수요는 비단 過多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無限이다. 가령 투입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價格非彈力的이다. 그리고 이 수요는 재정상태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수요함수의 형태는 표준적인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만약 기업에 이 ‘無限’ 需要를 顯存化시키지 않도록 하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일 것이다.

첫째, 되도록 多量의 資材와 半製品, 部品을 축적하고 싶지만 창고의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경우.

둘째, 與論이나 上級機關이 ‘사재기’(hoarding)에 대해서 비판적인 점. 여기에는 노동력의 ‘豫備’도 포함된다. 요구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자체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戰術上 有利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이다.

Kornai가 투입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滿足을 모른다’(almost insatiable)고 표현할 때는 이 두 가지 역제요인을 고려에 넣고 하는 말이다. 어떻든 기업의 수요는 투입재공급의 한계까지 반드시 도달된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시스템은 企業間의 投入・產出聯關의 영역에서 資源制約이 된다.

이 부분에서 Kornai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豫算制約이 軟性일 때는 Say의 法則이 妥當하지 않고 同時に Walras法則도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標準的 微視經濟學의 基本公理가 妥當치 않게 된다. 바로 여기에 不足經濟의 微視的 土臺를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다[Kornai(1980a, pp. 320~321; 1986a,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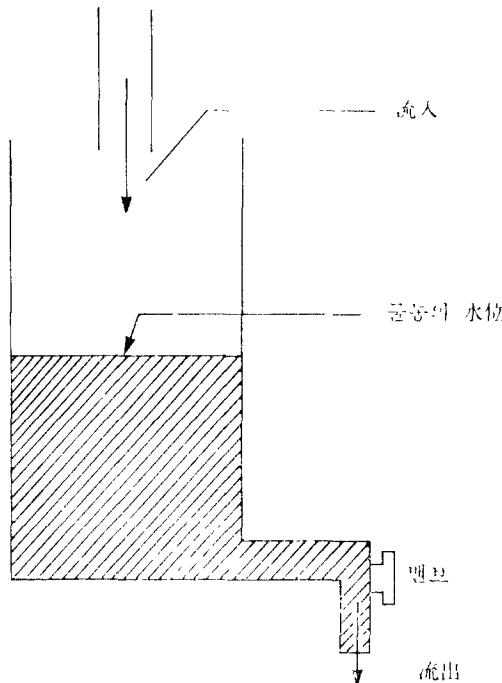
3.4. 巨視經濟學의 觀察

單純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두자.

- (1) 사회주의경제의 ‘古典的’ 형태를 고찰한다.
- (2) 短期分析을 한다.
- (3) 定常經濟를 기술한다.
- (4) 貯藏可能財만 취급하고 서비스는 제외한다.
- (5) 경제를 企業 sector와 家計 sector로 나누고 公共 sector는 제외한다.
- (6) 外國貿易은 제외한다.
- (7) 生産은 生產手段 生產部門(第 I 部門)과 消費財 生產部門(第 II 部門)의 두 부문으로 나눈다. 消費財의 유일한 구매자는 모든 소비자료를 화폐로 구입하는 家計 sector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現物로 지급되는 共同消費는 제외한다. 生산수단의 구입자는 기업이고 그것도 第 I, 第 II 部門 兩方의 기업이다.

이같은 가정하에 Kornai는 수식에 의한 모델作成 대신 水力學의 類推를 이용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품의 흐름은 液體인 물의 流量으로 표시하고 貯藏은 물의 貯水量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 〈그림 1〉에서처럼 시스템의 기술을 第 II 部門의 流出을 저장하는 물통부터 설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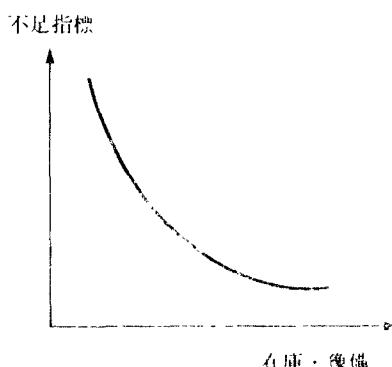
出處 : Kornai(1980a, p. 535; 1986a, p. 18)

〈그림 1〉 第 II 部門의 물통

로 한다. 第Ⅱ部門에 속하는 기업의 모든 제품이 생산되자 아직 가계에 넘겨지기 전에는 일단 여기에 流入된다고 간주하자. 이것은 마치 巨視的 觀點에서 볼 때 消費財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모든 完製品在庫와 商企業이 蕴藏하고 있는 상품이 하나의 거대한 창고에 集積되어 있는 모양과 같다.

이 第Ⅱ部門의 물통은 第Ⅰ部門의 물통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가정해 두자. 그럴 때 물통의 水位가 얼마나 되는가, 즉 完成消費品의 在庫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에 의존하는가? 물론 流出入比率에 의존한다. 流入率 즉 單位時間當 여기에 流入되는 제품의 양은 일정하다고 하자. 그러면 水位는 부착되어 있는 벨브를 얼마나 여닫는가에 의존한다. 이 벨브는 消費者物價수준과 가계의 名目所得을 변동시킴으로써 調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지의 초보적 거시경제학의 상호연관성이 등장한다. 일정한 消費者物價수준下에서 名目所得이 상승하거나 또는 名目所得이 일정한데 消費者物價수준이 하락하면 벨브는 더 넓게 열린다. 水位는 이런 경우에 하강하기 시작하며 流出이 流入보다 長期間 빠르게 계속되면 재고가 급기야는 바닥이 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방금 생산된 만큼의 상품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일정한 消費者物價수준下에서 가계의 名目所得이 하락하거나 또는 명목소득이 일정한데 消費者物價수준이 상승한다면 벨브가 좀 게 밖에 열리지 않는다. 물통의 水位가 上昇하여 소비재의 在庫가 더 쌓인다.

그런데 벨브는 가계의 예산제약이 硬性이기 때문에 가능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돈이 허용하는 범위밖에는 구입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물통의 수위의 중요성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 보자. 한쪽의 ‘在庫 및豫備’와 다른 쪽의 ‘不足의 強度’와의 사이에는 여타의 조건이 같다면 밀접한 負의 關係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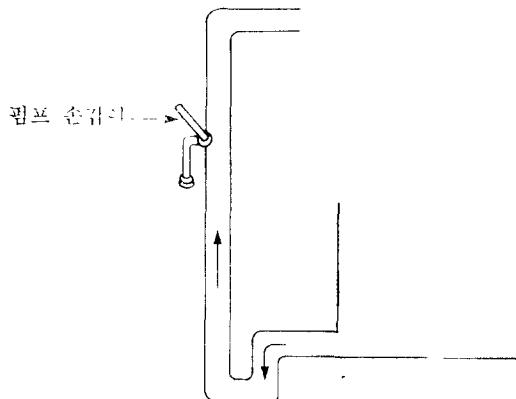
出處 : Kornai(1986a, p. 19)

〈그림 2〉 不足의 強度와 在庫・豫備量과의 關係

이 관계는 이론적으로 염밀히 증명되고 경험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다. 일상의 구매자의 체험에서 생각하면 이렇다. 具體的 購買意圖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을 때 상점에 상품이 가득하다면 첫 賣店에서 비교적 짧은 探索時間內에 사고 싶은 것을 찾아 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점 선반이나 창고가 텅텅비어 있다면 한군데가 아닌 여러 상점을 돌면서 찾고자 하는 상품 바로 그것이 ‘不足商品’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확률적인 관계일 뿐이다. 재고가 어딘가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모든 購買意圖의 정확한 實現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럴 경우라도 이는 단순히 부족현상이 일어날 확률을 줄여줄 뿐인 것이다.

이같은 思考過程에 입각해서 Korna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은一위의 가정하에서一消費者物價수준과 名目所得(<그림 1>의 뱌브)이 消費財의 在庫와豫備量(水位)을 制御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시장에서의 부족의 강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生產手段부문을 분석해 보자. 다음의 <그림 3>은 第 I 부문의 貯水통이다. 여기서도 거시적 견지에 따라 거대한 一時的 倉庫라고 간주하자. 第 I 부문의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생산수단이 물통에 流入된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투입재로 쓰는 第 I 및 第 II 부문의 기업들에게 생산수단이 공급되는 것이다.



出處 : Kornai(1980a, p. 539; 1986a, p. 20)
 <그림 3> 第 I 部門의 물통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물통은 第 II 부문의 물통과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우선 가정한다.

두 가지 물통을 비교할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차이점은 第 I 부문 물통에는 뱌브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企業 sector의 예산제약은 연성이다. 이 물통으로부터는 자유로이 액체가 流出된다. 즉 購買者(第 I 및 第 II 부문의 企業)의 수요는 支拂能力에 의한 제한이 없다. 더욱이 뱌브가 없는 대신 <그림 3>에는 물을 빠내는 펌프가 있다. 그런데, 물통은 비어 있다. 즉 생산수단의 在庫・豫備가 없고 동시에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부족현상이 있다. 비어

있는 第 I 부문의 물통은 거시수준의 水力學의 類推로 보아 미시수준에서 ‘生產은 항상 資源制約에 부닥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상태에 대응한다.

펌프의 비유가 갖는 의미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微視的 分析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인 ‘不足과 少剩의 同時的 出現’을 잊어서는 안된다. 水力學의 類推로는 물통 바닥은 완전히 평평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액체가 끼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더구나 내용물이 물이 아니라 물통의 벽이나 바닥에 잘 붙는 어떤 流動性이 부족한 物體일 때는 더 그렇다. 경제현실로 돌아오면 이 시스템의 諸過程은 마찰속에서 진행되고 적응이 더디며 수많은 오차를 가지고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의 吸水效果에도 불구하고 팔다 남은 재고가 바닥에 남게 되어 차원은 완전이용이 안된채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찰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는 펌프의 작동이 시스템의豫備를 대부분 흡수해 버려 부족이 심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3.5. 企業의 行動과 ‘不足’의 強度

그리면 여기서 펌프의 손잡이를 움직이는 原動力에 관해서 설명해 보자. 첫째의 힘은 經濟界에 널리 퍼져있는 ‘物量志向’이라고 하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계획의 달성을 指令하는 등 ‘緊張된’(taut) 中央計劃이 生產量追求의 유인이 된다. 計劃指令메커니즘은 그 ‘古典的’ 형태에서는 기업관리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생산량증대에 매진도록 독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항상 적접적인 指令의 형태만 가질 필요는 없다. 상급기관이 指示・命令을 하지 않고 단순히 ‘期待’를 강조하는 傳達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중앙과 기업간의 傳達形態가 指令이든 期待든 간에 ‘緊張된(taut)’ 計劃이란 기업에게 공급한 차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以上的 산출을 요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앞서 말한 ‘資源制約의 限界에 부닥치는’(hitting the resource constraint)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物量志向의 근원을 緊張된 중앙계획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중앙 계획이 自制力이 있고 온건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족은 分權的이고 自律的인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중앙이 발생시킨 부족을 더 확대하고 중앙의 경제정책이 부족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조차 부족이 지배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연성예산제약의 결과 구매자로서의 기업은 ‘거의 만족이 불가능한 수요’를 가지고 등장한다. 차원 즉 투입재의 현재의 공급이 얼마든지 간에 기업에게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되는 현상이다. 기업은 참을성이 없게 되고 생산자나 또는 상급 기관의 도움을 독촉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판매자의 입장일 때의 기업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실제든 상징이든 구매자들은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들은 내심 초조하여 기업을 몰아낸다. 여기서 판매기업은 指令이 없다해도 스스로 당황하며 되도록 조속히 급한 구매인을 만족시키고자 보다 많은 생산에 힘쓰게 된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 자신에게도 보다 많은 투입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이미 不足의 自己生產的인 魔法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慢性的인 不足, 資源制約, 物理的인 隘路에 여러 차례 봉착하게 되면 資材補給에 不安定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런 상태는 貯藏과 ‘備蓄’을 촉진한다. 產出在庫量이 도처에서 고갈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投入財在庫를 늘리려고 한다. 貯藏傾向은 不足의 自己生產에 더한층 박차를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不足이 不足을 낳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原動力은 ‘擴張追驅’(expansion drive)라 할 수 있다. 이것은 緊張된 중앙투자계획 때문에 형성되는 수가 있다. 경제정책이 생산을 급속히 확대시키려고 할 때는 투입재 수요가 可用投資財의 공급을 초과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게 된다. 투자활동의 實行도 계속 투자의 물리적인 자원제약에 부닥친다.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經常的 生產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中央指令이 ‘擴張志向’을 經濟管理의 中下級기관이나 기업에게 항상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이 ‘內的’ 強制이기 때문이다. 예외없이 모든 기업이 成長志向의이고, 그 利害대표인 監督機關도 자기 소관부문의 성장을 바란다. ‘投資渴望’(investment hunger)이 일반화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확장의 內的 強制와 동시에 投資渴望을 야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과 상급기관 또는 그 소관부문과의 일체화이다. 관리자는 누구든 자기에게 맡겨진 單位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흔히 送出하는 流出物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다. 그러면 확장이 당연해지고 긴급한 일로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不足의 自己再生 메커니즘을 보게 되는데, 이번은 長期的인 意思決定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不足의 認知는 擴張追驅, 投資渴望을 강화하고 이것들은 다시 부족을 증강시킨다.

그러나 확장과 투자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동기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성 예산제약인 경우 기업에는 투자를 단념시킬 아무런 장치도 없다는 사실이다. 투자의 危險負擔은 없어지고 재정파탄도 있을 수 없다. 투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할 기업은 없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社會狀況과, Keynes가 일찍이 다루었던 社會狀況과 本質的으로 다른 차이점이다. 케인즈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 실패를 두려워 하는 투자가를 자극해서 충분치 못한 私的 投資를 일부분 政府投資로 보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서 여기서 Kornai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칠 줄 모르는 ‘投資氣分’에 젖어 있는 기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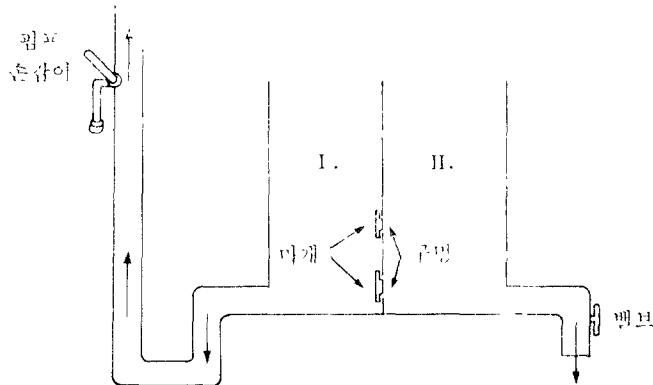
독특한 投資貨幣幻想(investment money illusion)이 형성되고 마치 企劃廳, 金融當局, 銀行같은 中央機關이 投資金融을 割當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투자활동을 물리적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開始許可를 나누어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이 행위가 시작되면 그것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 설령 原計劃보다 훨씬 많은 경비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위한 貨幣 ‘供給’은 투자행위의 물리적인 投入費用에 의해 야기되는 貨幣 ‘需要’에 수동적으로 맞추어진다. 투자의 예산제약도 軟性이고 有效하지 않다.

이상을 요약하면, ‘物量志向’은 正常的 生產의 투입재에 대해서 거의 만족불가능한 수요를 유발하고, ‘擴張志向’은 두자재에 대해서 거의 만족불가능한 수요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다.

Kornai는 여기서 비영리기관인 공공기관도 기업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들고 있다. 物量志向과 擴張志向이 여기에도 타당하여 ‘펌프로 빨아올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보건서비스나 교육서비스의 예처럼 주민은 무상내지 명목적인 가격으로 社會給付로서 이것들의 소비를 향수하려고 한다. 이같은 社會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시민에게 제공되지만 많은 경우 수요는 거의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단체가 ‘펌프로 퍼울리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펌프를 움직이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만일 중앙의 경제정책이 物量志向과 強制擴張을 先導해 간다고 하면 이 사실은 물론 펌프吸引效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중앙의 경제정책이 자기억제적이라 하더라도 펌프를 가진 수백의 中下級 管理機關, 수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自制를 기대할 수는 없다. 가령 일부가 펌프吸引을 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데서 모두 빨아들이고 만다. 기업, 공공단체 또는 관리기관의 長은 어느 누구도 부족의 결과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각자는吸引行爲를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두 개의 물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이 두 개의 물통이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 맞닿은 벽에 구멍을 뚫어 이를 통해서 액체가 浸透한다고 하자. 이 유추를 경제현실에 적용하면 한쪽에서는 가제만



出處 : Kornai(1980a, p. 541; 1986a, p. 25)

〈그림 4〉 浸透

이 구입하고 다른쪽에서는 기업만이 구입하는 두 개의 獨立적인 閉鎖市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가지 유형의 구매자는 동일한 供給市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구멍을 통해서 물은 양쪽 어느 방향으로든 흐른다. 이것은 실제로도 경제현실에서 일어난다. 가령 자가용차의 소유자는 영업용차에 앞서서 부품을 사며릴 수도 있고 그 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對稱性의 可能性은 있어도 현실에서는 流量의 실제 방향은 보통 非對稱的이다. 즉企業 sector쪽이 자기에게 유리하게吸引해 버리는 것이다.

이 때 잊어서 안될 사실은 우측의 第Ⅱ물통의 排水口에는 뱌브가 있지만 좌측에는 없다는 점이다. 第Ⅱ물통의 流入率은 계속 不變인데 뱌브를 흡게 열었다고 가정하자. 당분간은 水位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여타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현상은 일시적인데 불과할 것이다. ‘連通管의 法則’이 작용하여 한쪽 편이 비어있다해도 이 두 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 水位는 같아진다. 第Ⅱ물통에서도 第Ⅰ물통의 水位까지 내려간다.

이 유추의 경제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된다. 두 종류의 구매자 사이에서 不平等한 경쟁이 행해지고 있다. 가계는 예산제약이 경성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민감하다. 한편 기업은 예산제약이 연성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거의 또는 전혀 민감하지 않다. 기업은 비용의 상승을 결국은 구매자 아니면 국가예산에 轉嫁시켜 버린다. 이 때문에 구매자 사이의 경쟁에서는 기업이 가계에 대해서 유리하고 가계에 돌려질 공급의 일부를 그 目前에서吸收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Kornai가 들고 있는 예를 보면 이렇다. 택시 요금이 올랐다고 하자. 이에 대해 가계는 미시경제이론대로 반응하여 그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나 기업에 있어서는 택시요금 정도는 큰 出費가 아니다. 인상된 요금으로도 택시 이용률은 줄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

려 이전보다 利用度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택시잡기가 전보다 쉬워져서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심각한 예를 보자. 國營住宅의 임대료가 급상승했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많은 가정을 자발적으로 더 값싸고 작은 주택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주택임대료의 상승이 과도해지면 빈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빈집은 바로 企業 sector의 사무실로 吸收될 것이다. 많은 가계의 예산에는 무거운 부담이 된 賃貸料의 差額도 기업에게는 지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在庫와豫備가 第Ⅱ물통에서 第Ⅰ물통으로 連通管의 法則대로 침투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에서 지적한 ‘摩擦’ 때문이다. 消費者用商品이 企業用으로는 不適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家計用의 製品이나 서비스를 企業 sector가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行政介入이 있는 경우다. 이같은 行政介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의 구멍의 일부를 막거나 좁게하는 마개다. 물론 이러한行政的制約을 일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더구나 浸透가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모든 것에 이를 적용하기란 더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消費財市場에서 나타나는 부족의 강도는 消費商品의 供給, 消費者物價, 名目所得같은 標準的인 規制要因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 sector의 吸引效果의 強度에도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水力學의 유추를 통해서 Kornai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사회주의경제시스템에서 不足의 再生産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은 制度的인 基盤 즉 구체적으로는豫算制約의 軟性에 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족의 慢性的인 再生産의 계도적 여전들이 존속하는 한 가격수준의 안정성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족은 재생산된다고 보는 것이다[Kornai(1986a, p. 28)]. 사회주의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제안들이 기껏해야 對症療法에 불과하고 이같은 난제를 재생산하는 보다 깊은 원인의 계기가 아니라고 보았던 Kornai의 先見性을 여기서 평가할 수 있다[Kornai(1986a, p. 29)].

4. 社會主義經濟의 倫理性과 效率性

4.1. 두 가지 價值體系

Kornai는 헝가리의 1968년의 經濟管理改革이 일단은 성공적인 경우로서 예증하면서 이로 인한 헝가리의 經濟發展과 勞動生產性의 向上을 평가한다[Kornai(1980c)]. 그것은 결국 ‘經濟效率’의 達成이라는 改革目的이 적어도 헝가리에서는 일찍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ornai가 1986년의 한 논문에서 항가리 經濟改革의 理想과 現實의 乖離를 고뇌에 찬 펜치로 분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Kornai(1986b)]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Kornai가 經濟 ‘效率’과 經濟 ‘倫理’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먼저 經濟效率의 必要條件에 관한 Kornai의 설명을 보자.

그가 제시하는 經濟效率提高의 다섯 가지 條件은 아래와 같다.

(1) 經濟運營의 參加者인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보다 좋은 업적을 올리도록 자극하는 物質的・倫理的인 ‘誘因시스템’이 필요하다.

(2) 費用과 便益을 고려하는 ‘計算’을 신중히 해야된다. 稀少資源을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효율적이 아닌 활동은 정지해야 한다.

(3) 모든 狀況과 外的 環境에 신속하고 유연성있게 ‘적응’해야 된다.

(4) 意思決定者の ‘企業家精神’ 즉 創意性, 革新性, 危險負擔이 필요하다.

(5) 맡겨진 문제나 決定에 대해서 모든 意思決定者は ‘個人的 責任’을 져야 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은 固有의 社會主義의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資本主義의 性格만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Kornai는 이같은 조건은 效率적인 관리와 조직화를 기하는 데 있어 ‘一般的’으로 有效한 原理라고 본다. 東歐社會主義諸國의 公式的인 경제학적 해석은 初期改革以前⁽¹⁰⁾부터 항시 이를 조건을 경제발전과 노동생산성향상을 위한 必要條件으로 인정해 왔던 것이다.

그리면 또 하나의 價值體系는 어떤가?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倫理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公理나 궁극적 命題까지는 못된다 하더라도 Kornai는 여기서 네 가지 原理를 제시한다. 이것들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實踐的 役割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四原則은 일찌기 노동운동의 여명기에 자본주의체제내에서 등장한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지만 Kornai에 의하면 사회주의 경제하에서도 再評價되어 새로운 뜻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A) 社會主義의 賃金制度의 周知의 原理인 ‘各人은 그 勞動에 따라’라는 원리. 이 원리는 또 하나의 周知하는 分配原理 즉 ‘同一勞動 同一賃金’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에 따르는 分配원리를 일관되게 실현하려면 同一質量의 勞動에는 同一한 報酬가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 東歐의 經濟改革試圖는 1960년대 中期부터 波狀의으로 진행되어 왔다.

(B) 連帶의 原理. 사회주의는 약자를 가차없이 추방하는 無情함을 一掃한다는 것이다. 약자가 그 약점 때문에 制裁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向上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C) 安全의 原理. 사회의 모든 성원이 安心感을 가져야 된다. 이 원리는 위의 원리(B)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個人이나 小共同體에 安心感을 갖게 한다는 것은 혹 곤란한 일이 생겨도 보다 큰 共同體가 즉시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期待를 할 수 있다는 意識이다. 둘째는, 사회는 단순히 一時的으로 뿐만 아니라 常時 完全雇傭을 보장해 주어 失業의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 셋째, 같은 安心感이 완전 고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一般的인 형태로 모든 成果에 적용된다. 한번 획득된 생활수준을 將來에 걸쳐서도 사회가 보장해 줌으로써 이것이 더 한층 強化된다.

(D) 個人이든 小共同體이든 部分利害에 대한 ‘全體利害의 優先’. 이 원리는 短期的 利害나 現世代에 편리한 利害보다는 長期的인 장래의 몇 세대에 걸친 利害의 優先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제원리를 확신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價值體系 즉 效率性과 社會主義的 倫理價値사이에 矛盾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정착되어 있었다. Kornai는 이같은 생각의 기원은 폴란드 경제학자 Oscar Lange의 사회주의이론에 관한 30년대의 고전적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Lange는 Walras의 세례를 받아 사회주의의 分權的 市場經濟를 서술하고 있다[Lange(1938)]. 그것은 效率的으로 機能하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윤리에 입각한 社會시스템에 마찰없이 接合되는 經濟라고 보았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傳統的 思考는 實證되지 않았다는 것이 Kornai의 견해다. 한쪽의 效率性에 관한 (1)~(5)의 條件과 다른 쪽의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A)~(D)의 倫理原則과의 사이에는 衝突이 일어나는 것이 菲연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갖가지 모순은 바로 이 두 가지 체계의 충돌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ornai는 자신이 수리경제학자로서 ‘合理性’과 ‘效率性’의 원리라든가 分權的 市場의 託託한 效果에 관한 이론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社會主義的 社會倫理의 理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온 자기의 사고 때문에 항가리 경제의 現實的 體質에 대해서 矛盾을 느껴왔던 점을 고백하고 있다[Kornai(1986a, p. 127)].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체계의 충돌을 피하고 이것을 調整할 原理의 可能性은 없는 것일까?

4.2. 利潤인센티브

항가리의 初期經濟改革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企業利潤과 결부된 物質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위에서 본 다섯 가지의 效率性條件 모두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

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에 의하면 利潤인센티브는 ‘各人은 그 勞動에 따라’ 分配받고 ‘同一勞動은 同一賃金’을 지금 받는다는 優理原則(A)과 충돌한다.

항가리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利潤分配制度가 도입되었는데, 이 자체가 바로 原則(A)에 저촉되는 일이었다. 同一勞動實績을 올리서 同一賃金을 받는 두 근로자의 總所得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많은 이윤을 분배받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항가리의 기업처럼 賃金決定의 自主性이 인정될 때는 收益性이 높은 기업은 그것이 낮은 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利潤分配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다 높은 賃金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同一勞動實績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에 큰 格差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례를 들어 보자. 기업 G가 기업 H보다 많은 이윤을 올린다고 하자. 그것은 기업 G의 관리자와 근로자의 보다 나은 能率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기업 H보다 勞動規律이 높고 生產物의 品質管理에도 더 힘쓰며 環境變化에도 더 유연하게 적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高利潤을 얻고 있다는 등이다. 그러나 이 기업의 보다 큰 이윤이 從業員들의 功績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들과는 상관없는 이유에 의해서도 높은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기업 G가 불리한 기업 H보다 더 좋은 기계를 利潤分配 도입 以前부터 承繼했을 수도 있다. 또는 이 두 기업의 生產物 販賣價格이 중앙에서 결정할 때 기업 G의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두 기업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國際市場價格이 G기업에는 유리하고 H기업에는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업 H의 관리자와 근로자는 이같은 所得格差를 ‘不公正’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利潤이僅少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非能率 때문이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所得의 平準化를 위해 上급기관에 압력을 넣는다. 上급기관 자신도 지나친 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주의운동의 平等主義的 傳統과 ‘同一勞動 同一賃金’ 원리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平準化傾向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手段이 쓰인다. 하나는 기업의 粗利潤을, 중앙과 지방당국에 납부하는 稅金과 기타 賦課金이라든가 기업의手中에 남기는 投資基金과 福利厚生基金 또는 利潤分配와 賃金引上에 쓰일 자금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규정하는 일반적 규칙이 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해서 여러 가지—특히 所得平準化—to 고려하여 만들어내는 公式을 사용해서 정한다. 이 점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그 자체가 인센티브 效果를 소멸시킨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過多’ 所得의 吸收를 위해서, ‘客觀的 困難’으로 인해서 발생한 亦字의 補填을 위해서 企業財政狀態에 대

한 臨時의 特別介入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지난날에 있어서 企業粗利潤의 近三分의 二가 국가에 흡수되어 再分配되어 왔다.

이처럼 수많은 통로를 통하여 事前에는豫測·計算할 수 없는 再分配가 이루어짐으로써 利潤인센티브를 환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지출은 이를바 ‘豫算制約’에 의해 제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조건 하에서는 기업의 예산제약은 ‘軟性化’되어 버린다. 즉 예산제약이 기업의 결정을 구속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기업은 중대한 사태를 겪는 일 없이 예산제약을 넘어서 설 수 있게 된다. 뒷받침이 없는 지출이 원인이 되어 財政的 赤字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라가 이것을 補填해 주는 것이다.

기업이 가령 자기와 관계없는 이유나 외부의 요인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봉착했을 때는 두 가지 상이한 方法으로 이에 반응할 수 있다. 한 가지 행동은 그 난관에 직접 맞서서 대처하려는 방법이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희생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난점이 극복되지 않고 적자가 계속되는 동안은 他企業보다 소득도 적다. 행동의 첫 목적은 생산을 되도록 유연하게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제 2의 행동은 기업이 상급관청에 원조를 구하는 길이다. 대표를 파견하여 窮狀을 호소하고 汲訴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비化’가 시작되면 기업은 정치적 조직이나 사회적 조직 또는 상급 국가기관에 기업을 위해 도움을 줄 後見人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 개인적인 연줄도 이용한다. 이 두번째 행동의 목적은 재정적 원조를 얻어 되도록 속히 다액의 國庫補助, 租稅優待, ‘軟性의’ 信用을 획득하는 데 있다.

두번째 행동의 당연한 귀결은, 改革後에 自律性이 강화된 기업으로 하여금 거의 자발적으로 後見人 치마폭에 봄을 의지하게 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함으로써 金融機關, 銀行, 價格當局 등 요컨대 기업의 재정상태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중앙기관에 대한 從屬이 유지되고 더 강화되어 갔다.

다음에는 所得平準化 傾向의 效率性의 제 4 조건인 ‘企業家精神’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자. 革新은 新製品 開發이든 新技術, 새로운 組織, 新市場開拓이든 언제나 危險을 수반한다. 성공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성공한 차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할 가치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의 改革後 항가리의 경험에서 보면 기업관리자가 손실을 내는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버는 일도 없었다. 과감한 ‘飛躍’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눈에 띠게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은 언젠가는 ‘吸收당하게’ 되어 있었다. 所得의 平準化는 작전 크진 業績의 平準化를 수반한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야말로 效率性條件과 사회주의 경제의 倫理性原則과의 衝突의 사례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結論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예산체약이 硬性일수록, 기업의 관리자와 근로자의 소득이 實際의 利潤에 依存할수록, 不平等한 所得格差가 일어날 것이다. 그 반대로 ‘同一勞動 同一賃金’ 원리의 실행이 徹底할수록 점점 더 利潤인센티브의 刺激效果는 弱化될 것이다[Kornai(1986a, p.130)].

4.3. 企業의 存續과 成長

위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분석대상으로 企業의 存續과 成長의 문제가 있다. 앞 절에서 效率性의 제 2 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비효율적일 때는 그런 활동은 정지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어떤 기업이 장기에 걸쳐 큰 적자를 냄 때는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기업을 閉鎖하여야 된다. 이것이 당해 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게 되든 또는 노동자에게 일시적인 실업을 가져오게 하든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청은 물론 (B)와 (C)의 倫理原則과 모순될 가능성 있다. ‘連帶’의 원리에 따르면 약자의 共同體로부터의 脱落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들이 금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또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安全’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구성원은 한사람도 破綻・失敗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한번 달성된 개인적인 성과는 장래에도 보장되어 있다는 安心感이 있어야 된다. 더구나 문제가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가 아닌 본인과는 무관한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는 더 그렇다.

항가리에서는 1968년의 經濟改革후에도 企業倒產이나 赤字企業의 解產같은 사태가 전연 발생하지 않았다. 국고가 적자를 代行한 셈이다. 경쟁에 의해서 실현되었어야 할 ‘自然淘汰’가 일어나지 않아 강한 기업도 약한 기업도, 적극적인 기업도 소극적인 기업도, 창의적인 기업도 무능한 기업도 모두 폭풍에 살아남은 格이다.

국가가 倒產의 限界에 처한 기업을 살려내는 데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다. 特別補助金支給, 製品價格의 特別引上認定, 租稅나 關稅의 優待措置, 條件이 有利한 信用供與, 또는 債還期限 延長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措置가 가져 온 效果를 一義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連帶와 安全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생활에 있어 큰 가치라 하겠다. 기업과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생활은 평온해 지는 것이다. 그것은 死活이 걸린 위기에서 발생하는 불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느긋하고 나태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일 기업의 존속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기업관리자의 개인적 책임도 애매해진다. 즉 效率性의 제 4 조건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存續保障은 개인의 職場保障 즉 完全雇傭보장과 더불어 뿐리깊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회가 항상 포지티브한 物質的・倫理的 인센티브만으로, 즉 優越한 勞動에 대한 자극만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負의 經濟인센티브 즉 실패나 개인의 物質的・倫理的 損失을 ‘두려워’ 하는 효과를 없애버려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Kornai는 제기하고 있다[Kornai(1986a, p. 132)].

그러나 여기에도 중대한 딜레마 즉 이질적인 두 가지 價值體系의 衝突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한쪽에는 效率性의 要求와 다른 한쪽에는 連帶와 安全이라는 倫理基準과의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의 과제는 企業成長과 이에 관련되는 投資配分이다. 우선 投資決定이 완전히 分權化되어 있다는 假說體系에서 출발하기로 하자. 이 체계는 效率性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 제4, 제5의 조건인 企業家精神, 創意性, 革新性向 등이 강화되고 투자결정에 대한 個人的 責任도 보다 彈力的으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完全한 分權化는 한두 가지 效率性條件과 충돌할 것이다. 우선 넓게 해석해서 費用・便益의 計算에 관한 제2조건과 상충된다. 여기서 우리는 후생경제학의 周知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完全分權的 市場은 국가개입이나 기타 사회적 개입이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現場決定의 外部效果인 外部便益・外部費用을 계산에 넣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면 社會的 利害의 優先이라는 倫理의 原理(D)의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어떤 기업이든 자신의 이윤밖에는 관심이 없는 투자결정을 내린다면 外部便益을 가져올 사업은 뒤로 밀릴 위험이 큰 것이다.

이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의 經濟改革 후 항가리에서는 投資決定의 權限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 配分하는 작업을 해왔다. 1976年에는 國民經濟의 投資總額 중 절반씩을 中央決定과 企業投資로 나누는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투자라 하더라도 기업자신의 蓄積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50%에 불과했으므로 全投資중 1/4밖에 完全한 分權化라 볼 수 없었다. 나머지 1/4을 위해서 기업은 國庫補助나 長期信用에 매달려야 했으니 이 기업투자결정에는 중앙계획기관과 금융기관, 은행 그리고 기업이 共同으로 참가하는 그런 형태였다.

이같은 상황 즉 ‘集權化와 分權化의 結合’에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 가령 중앙기관은 完全分權化에 의한 투자결정이 社會全體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경우 이것을 中央決定에 의한 투자로 平衡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지방이나 개별기업의 이해에 대한 社會的 利害의 優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즉 중앙은 기업의 短期的 利潤關心을 제한하여 사회의 長期的 利害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결정권한의 이와 같은 組合은 하나하나의 구체적 의사결정의 준비단계에 多樣한 情報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업은 구체적인 部分 情報를 제공하고 이에 참가하는 상급기관은 보다 大局的인 情報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단점은 따르게 마련이다. 투자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의 財政援助나 信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앞서서 지루한 官僚主義的 過程이先行된다. 이것이 유연성있는 適應力を 상쇄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제 3의 效率性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이나 투자에 利害關係가 있는 하급기관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해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키자면 個人的 人脈도 활용하려고 한다. 한편 중앙기관에 종사하는 경제전문가나 계획입안자는 全社會的인 理性을 갖춘 非人格的인 냉혈동물도 아닐뿐더러, 사회를 초월해 있는 英明한 플라톤적 이상국가의 철학자도 아니다. 그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사회속에서 생활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다른 동료들과 몇겹의 연대속에 존재한다. 결정에 있어 經濟計算의 嚴密한合理性이 얼마나 작용하는 것인지, 또는 事後에 비로소 '合理的'인 것이었다고 正當化되는 개인적 판단이 얼마나 작용하는 것인지 분간이 어렵다. 상급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결정은 그 外部效果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배려도 이 事業에 利害關心이 있는 기업의 영향이나 이의 관점으로 인해서 不明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투자가 잘못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투자결정에 선행하는 意思決定過程의 社會學과 社會心理學을 이해하여야 된다. 잘못된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정에는 多段階의 反復的인 情報와 決定準備과정이先行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한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 꼬이 된다. 하나하나가 그 투자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다만 交涉相對 때문에 타협이 불가피해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결국 투자결정의 '個人的 責任'은 어딘가에 무산되어 버림으로써 제 5의 效率性 조건이 침해된다.

이것은 중대한 손실을 일으킨 기업을 국가가 救出해 주는 현상의 설명과 관련된다. 단순히 '國家'가 원조하는 것이 아니다. 國家資金을 사용하여, 集團的 決定과 그 準備에 관여한 당해 官吏를 돋는 것이다. 가령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자. 건설이 지연되고 예상이상으로 건물이나 기계 구입에 많은 돈이 들고, 새 기계시설로 생산

된 수출상품이 기대했던 가격으로 팔리지 않았다는 등등이다. 우선 이 事業의 責任을 질 자는 누구인가? 이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책임문제가 첨예화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그들이 왜 원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投資配分을 둘러싼 이와 같은 상황은 위에서 말한 企業의 存續과 成長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기업의 투자가 自己金融이나, 收益性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信用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정상태가 불량한 기업도 國庫補助나 長期信用을 얻을 수 있으니 기업은 그 ‘存續’ 자체뿐 아니라 ‘成長’ 조차도 收益性에 엄밀히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점이야말로 Kornai가豫算制約의 軟性化라고 보는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기업은 그 투자행위의 실행에 있어서 큰 危險負擔없이 자기의 可用資金源을 초과해서 운영할 수 있다. 손실은 어떻게든 국가가 보상해 준다. 이것이 투자의 경솔한 차수와 실행과정의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이것이 效率性에 유해함은 물론이다.

이 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한편에는 部分利害에 대한 社會的 利害의 優先權을 뜻하는 ‘倫理原則(D)’가 있다. 이 원리를 관철키 위해서는 投資配分에 관한 기업 또는 지방기관의 決定權限이 제한되고 社會的 利害를 대표하는 중앙기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의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한편의 원칙인 ‘效率性條件’과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倫理原則(D)가 철두철미 관철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部分的 利害가 사회의 共同利害와 결정적으로 대립되는 경우조차도 오히려 이것이 優先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¹⁾

5. 結 語

앞 장에서 우리는 利潤인센티브와 企業의 存續・成長의 제문제를 개관하면서 여기에 效率性條件과 倫理性原則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모순을 해결할 可能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Kornai는 現實的으로나 理論的으로 명쾌한 대답이 현단계에서는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경제학은 아직도 빈약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¹²⁾

(11) Kornai가 관찰한 베스트로이가 以前段階의 항가리 經濟가 이렇거늘 分權化 指向의 韓國經濟에서 倫理原則(D)가 침해될 程度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12) Arrow의 ‘不可能性定理’를 聯想시키는 대목으로서 이에 관한 Kornai와 Arrow의 類似性과 差異點에 관해서는 Kornai(1971, 25章)를 참조.

이상적인 사회의 완전무결한 청사진을 들고 소리치는 자신만만한 ‘使徒者的 經濟學者’를 Kornai는 경멸한다[Kornai(1986a, p. 136)]. 순수한, 그리고 완전히 ‘原理대로’ 모순없이 작동하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現實의 시스템은 어떻든 서로 矛盾된 原理와 要件의 實際的인 妥協속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타협은 效率과 倫理의 相互 矛盾된 原理들의 長點의 結合이라면 바람직스런 것이 되겠으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쌍방의 단점만이 격화되고 장점을 제거시킴으로써 效率과 倫理가 동시에 상실되는 바와 같은 최악의 混合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Kornai는 주로 1968년 이후의 항가리 經濟를 관찰함으로써 比較經濟시스템의 一般理論的視界를 넓혀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전달하고자 한 신호는 첫째로 지난날에 歷史的으로 存在했던 古典的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本質을 解明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以後의 社會主義의 經濟改革의 의미와 한계도 透視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分權化가 支配的인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문제와 함께까지 위와 동일선상에서 성찰할 수 있는 視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 (02) 880-6363
 팩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 Friedman, M., F.A. Hayek et al.(1974) : *Inflation: Causes, Consequences, Cures*, London, IEA.
- Keynes, John Maynard(1936)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Macmillian.
- Kornai, János(1971) : *Anti-Equilibrium*, Amsterdam, North-Holland.
- _____ (1980a) : *Economics of Shortage, volume A&B*, Amsterdam, North-Holland.
- _____ (1980b) : “Hard and Soft Budget Constraint,” *Acta Oeconomica*, 25, 231~245.
- _____ (1980c) : “The Dilemma of a Socialist Eco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Feb., 147~157.
- _____ (1986a) : *Contradictions and Dilemmas: Studies on the Socialist Economy and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_____ (1986b) :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s,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687~1737.
- _____ (1990) : *The Road to a Free Economy: Shifting from a Socialist System: The*

- Example of Hungary*, New York, Norton.
- _____(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1995): *Highway and Byways: Studies on Reform and Postcommunist Transition*, The MIT Press.
- Lange, Oscar(1938):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in B. Lippincott,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 Marx, Karl(1867): *Capital*, vol. 1.
- Tardos, M.(1975): "Enterprise Independence and Central Control," *Acta Oeconomica*, 1, 17~32.